

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	287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0년 10월 14일

발 의 자 : 장문혁 의원

찬 성 자 : 이주웅, 박찬원
지광천, 심현정
이명순 의원

1. 주 문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및 「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2조에 따라
중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나. 심사기간은 2020년 10월 19일, 1일간으로 한다.

2. 제안이유

- 가. 의원발의 「평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
관한 조례안」 외 1건, 평창군수가 제출한 「평창군 통합재정안
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」외 10건, 총13건의 조례안을
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위원 6명으
로 구성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 : 관계법령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
나. 「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2조

심 사 제 획

1. 활동목적

-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및 신속한 의사진행
-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

2. 심사안건

-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
-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
- 평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
- 평창군 헌혈 권장 조례안
-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-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-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- 평창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- 평창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-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평창군 농업교육 지원 및 농업교육관 운영 조례안
- 평창군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- 평창군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-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3. 활동기간

- 2020년 10월 19일, 1일간으로 한다.

4. 구성

○ 이주웅 의원, 박찬원 의원, 지광천 의원, 장문혁 의원, 심현정 의원, 이명순 의원

5. 운영계획

일시	차수	내 용	비 고
2020. 10.19. (월)	제1차 조례 특위 (13:30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.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. 평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. 평창군 헌혈 권장 조례안 5.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.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.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.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. 평창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. 평창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.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. 평창군 농업교육 지원 및 농업교육관 운영 조례안 13. 평창군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. 평창군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.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	

【관계법령】

□ 지방자치법

제56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

□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

제2조(설치) ① 평창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 본회의(이하 “본회의”라 한다)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② 의회는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를 위하여 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 이 경우 예산안 관련 안건(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말한다)의 심사를 포함한다.

③ 의회는 의원윤리 및 징계·자격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④ 위원회는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기간 내에 활동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위원회에서 심사 등을 한 안건 등이 본회의에서 의결 또는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.